

제 444 호

1974. 6. 8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 복 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 진 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중앙인쇄소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계
 - 제 843 호 : 서울특별시공원조리증개정조례..... 3
- 고 사
 - 제 5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건설) 및
저지승인..... 4
 - 제 5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 계획인가..... 5
 - 제 5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매시장) 변경과지적승인..... 6
 - 제 55 호 : 공유수벌채림공작물공기간연장허가..... 7
- 공 고
 - 제 75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일동조합회포자 및 주소
변경공고..... 8
 - 제 76 호 : 서울특별시성동부내복지관공인개작공고..... 8
 - 제 77 호 : 복지구확장지사업지구확장예정지 지정일부
변경공고..... 9
 - 제 79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물품산지점입체적정 및
차관지원요령개정..... 12
 - 제 80 호 : 공시송..... 13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 2. 시보는 공공서신서비스 혜택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81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대체 지정공고.....	13
제 83 호 : 서울대학교철거민정착단지조성사업완료공고.....	13
제 84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 및 지정취소공고.....	14
제 87 호 : 서울특별시립동대문부녀복지관공인개각공고.....	15
◎ 예 규	
제 271 호 : 시유재산관리 및 처분업무요령.....	16
◎ 사 명	
	19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5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신설) 및 지적승인

1. 당시 판례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및 지
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호 (73.4.4)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 4. 23.

서울특별시장

- 1. 로선조서별첨
- 2. 관계도서별첨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 구청에 보관.

로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부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8 ⁷⁷	64 ⁷²	역촌동 198-25	역촌동산 25-11	위치일부변경
변경	"	3		6	64	"	"	
기정	"	3		6	71	용암동 166	용암동 157-1	
변경	"	3		6	78	" 167-2 앞	" 157-1 앞	기존도로활용 위치일부변경
신설	"	3		6	24	하왕십리동 890-257	하왕십리동 890-184	
기정	"	3		6	190	화곡동 82-3	화곡동 73-45	기존도로활용 위치일부변경
변경	"	3		6	190	"	"	
기정	"	3		6	80	신림동 223-2	신림동 230-3	위치일부변경
변경	"	3		6	84	"	"	
기정	"	3		6	76	사당동 46-2	자당동 57-56	기존도로활용 위치일부변경
변경	"	3		6	76	"	"	

구분	등급	구분	번호	면적	연장	기 경	중 경	비 고
기정	초토	3		6 ^m	540 ^m	상도동 211-1	상도동 210-18	연장축소
변경	"	3		4	200	" 211-1	" 211-176	
기정	"	3		6	360	" 214-210	" 211-17	위치변경
변경	"	3		6	400	" 214-218	" 210-18	
기정	"	3		6	85	" 211-6	" 216	
변경	"	3		6	85	" 211-6	" 215	
기정	"	3		6	40	" 214-104	" 214-291	위치변경
변경	"	3		6	40	" 214-104	" 214-291	
신설	"	3		6	90	" 214-107	" 214-3	

◎ 서울특별시고시제 53 호

도지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2948 (66.12.17) 호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8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소유권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4.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등포구 구로 1 동
2. 사업종류 및 명칭 : 구로동입구저하 도로공사
3. 사업규모 : B = 20 미터
L = 170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3. 2. ~ 1974. 4.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별첨)
7.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9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도시계획시설(도매시장) 결정과 착공승인

1. 당시 관부 도시계획시설(도매시장)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6호 (74.4.5)의 규정에 의하여 이 가. 도시계획시설(도매시장) 조서

를 도시한다.

2. 관공토지는 당시 도시계획부 도시계획위원회 상부구청 시정공사실에 비치하여 표시조유한 일 이해관계인에게 표시키 한다.

1974. 4. 30.
서울특별시

순차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도매시장	기내성북구중앙동 8-117의 71필지	(2,937.8)㎡ 7,387㎡	중수상물 수상부건이탈분장

도면 : 생략. 조서 : 별첨

지 적 조 서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성북구중앙동 8-117	대	20필	성북구중앙동 8-125	대	71필
" 8-50	"	32	" 8-126	"	34
" 8-115	"	14	" 8-127	"	20
" 8-116	"	34	" 8-128	"	28
" 8-118	"	14	" 10-25, 141	"	41
" 8-119	"	74	" 8-71	"	63
" 8-120	"	14	" 8-143	"	63
" 8-121	"	75	" 8-76	"	60
" 8-122	"	46	" 8-133, 42	"	60
" 8-123	"	15	" 8-77	"	60
" 8-124	"	19	" 10-94	"	135
			" 8-53	"	135
			" 8-72, 8-90	"	182
			" 8-95	"	254
			" 10-263, 270	"	254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성북구중암동 8-130 10-271	대	15.7 ^평		성북구중암동 10-251	대	24 ^평	
" 8-131	"	15		" 10-163 10-221	"	53.8	
" 8-132 10-255	"	11.2		" 8-268	"	63	
" 10-256, 272	"	14.4		" 8-213	"	42	
" 10-257	"	15.3		" 8-214	"	62	
" 10-258	"	51.8		" 8-217	"	55	
" 10-20	"	34.6		" 8-220	"	101	
" 10-259	"	15.2		" 8-221	"	80	
" 10-162	"	46		" 8-222	"	56	
" 10-248	"	24		" 178	"	417	
" 10-249	"	24		" 8-133, 138 8-51	"	83 ^평	
" 10-250	"	35		총 계	72 ^필	2,237.8 (7,587㎡)	

◎ 서울특별시 고시제 55 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기간 연장 허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허가하였으므로 이에
고시한다.

1974. 5. 1.

서울특별시 장

1. 연장허가년월일 : 1974.5.1

2. 매립장소 : 서울특별시성동구잠실동
지선

3. 수면의 종류 : 하천

4. 면적 : 768,349 평

5. 목적 : 여지조성 및 하천개수

6. 연장허가기간 : 1974.6.21 ~

1975.6.20.

7. 허가를 받은자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중구동자동43-18

간설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영 년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75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대표자
및 주소변경 공고

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 변경 사항

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을 서울특별
시 단체감목규칙 제 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한다.

1974. 4. 24

서울특별시장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시비철금속 공업협동조합	곽규학	과 동	서울시중구율지로 5가 77의 24	서울시중구율지로 5가 275의 5	25-8150
서울시연색공업 협동조합	안이현	정호진	서울시동대문구 신설동 101-7	서울시중구주교동 25번지	27-5024

◎서울특별시공고제 76호

서울특별시성동부내복지관공인
개 각 공 고

서울특별시조례제 837호 (1974.4.19)
로기관명칭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같

이 서울특별시 시립성동부내복지관장의
직인을 개각하였기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 9조에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4. 4. 24.

서울특별시장

1. 개각공인사용일자 1974. 4. 24 0시

2. 직인의 인형

경 신 직 인

경 신 계 인



폐 기 직 인

폐 기 직 인



◎ 서울특별시 공고제 77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에정지 지정일부변경 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시유, 김포, 경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에정지 지정을 별첨도시와 같이 변경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6 조 및 동법 제 5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 지정을 일부변경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공사완료 및 다른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

3.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와 관할구청 및 관할출장소 시

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환지에정지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 (별첨)

1974. 4. 26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79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1974. . .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상공부고시

제 10496호 (74.2.4) 동개정고시 제 10513 호 (74.2.26), 동공고 제7629 호 (74.2.11) 및 동공고 제 7639 호 (74.2.26)에 의하여 내수산업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품 생산업체 또는 수출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업체를 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로의 지정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지정대상) ①이 요령에 의한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상공부장관이 정한 유형구분에 의한 제 1 및 제 2 유형에 분류된 품목생산자중 수출특별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수출품 생산 및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가입자로 한다.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조합가입이 불가능한 업종 생산자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4 조 (업종분류) 별표의 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 생산자는 협동조합 가입자가 아니라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 1만불이상의 수출 실적이 있고 앞으로 계속 수출이 가능한자
2. 앞으로 1년 이내에 2만불이상 수출이 가능한자
3. 최근 1년내에 신규 수출상품 생산자로서 앞으로 계속 수출이 가능한자
4. 우수 특제품으로서 수출실적이 있고 앞으로 계속 수출이 가능한자
5. 수출용 원부자재 생산업체로 최근 1년간 공급실적이 있고 앞으로 1년내에 2만불 이상 공급이 가능한자
6. 상공부에서 완구수출품 생산표준

화 공장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수출실적이 있고 앞으로 계속 수출이 가능한자

제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조 (자금지원) 서울특별시장은 지정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제 명

수출산업화자금, 토산품육성자금, 전문계열화자금, 기업합병자금 (이상 추천자금) 시설근대화자금 및 시비 재정자금 (이상 직책자금)

2. 자금구분

가. 수출산업화, 토산품육성 및 시비 재정자금: 시설 및 운전자금
나. 시설근대화, 전문계열화 및 기업합병자금: 시설자금

3. 제 원

상공부장관이 배정한 지방관리 자금과 시비 재정자금 및 중앙관리 자금 (추천자금)

4. 지원 한 도

가. 지원자금의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시설자금 30,000,000 원이내 운전자금 20,000,000 원이내 (당 시비재정자금은 거대출 잔액을 포함하여 시설자금 20,000,000 원이내, 운전자금 10,000,000 원이내로 하되 시설, 운전자금을 합하여 20,000,000 원이내

5. 지원비율: 소요자금의 70%이내로 한다.

6.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방법등을 별도 공고한다.

제 6조 제 1항 나호중 5단절을 2만 원으로 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1974.5.1 부터 시행한다.

2. 이요령 시행이전에 거적 지정된 지정업체는 이요령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공고제 80 호

공 시 송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4 가 130-2 (별지참조)

성 명 윤 주 탁 의 3 명 (별지참조)

서류의명칭 토사에각대 부족금 추정금 납입고지서

서류의내용 74. 수 시

1,503,440 원 (별지참조)

위의 서류를 74년 4월 1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가 불명함으로 납입일 1974년 5월 7일까지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건설 사업소 관리과에 납부하여 주시기 서울특별시 하천점용토 징수조례 제 1 조 및 지방세법 제 52 조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74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별 기 내 용

년도	기분	금 액	납 입 자		추 정 내 용
			주 소	성 명	
74	수 시	474,000	성북구 동선동 4 가 130 - 2	삼 방 기 업 사 윤 주 탁	69.6.20 조례 개정징수부족금
.	.	331,800	영등포구노량진동 231 - 51	최 수 경	.
.	.	568,800	마포구도화동 1-206	세한사리기업사 김 욱 영	.
.	.	128,840	용산구청파동 1 가 3 - 51	이 도 신	.
계		1,503,440			

○ 서울특별시 공고 제 81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진흥
 생산지원업체의 모집 공고

중소기업수출진흥생산 지원업체의 모
 체 지원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1974. 4. 27

서울특별시청

1. 위소 및 당회 지정

위 소					지 정				
지번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종	지번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종
567	상화산업 상 사	강기원	성북구중암 동 16-2	작업 장갑	557	태일기업 주식회사	박종태	성북구중암 동 16-2	작업 장갑

○ 서울특별시 공고 제 83 호
 서울대학교 철거면정착
 단적조성사업확대공고

1974. 4. 29

서울특별시청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46 호 (73. 8. 28) 로 시행허가편바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준공을 도 시계획법 제 85 조 1 항 및 제 46 조 제 3 항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 4. 4)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악구철거민봉사업 추진과 비치하여 비치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기 한다.

1974. 4. 29

서울특별시청

1. 사업점령지 : 시내관악구신림동산 72 - 1 의 2 필지
2. 사업 명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 준공면적 : 8, 875 평
4. 사업시행자 : 서울대학교 공광 한 심 석
5. 사업기간 : 착공 : 73. 8. 20 준공예정 : 74. 4. 30
6. 준공년월일 : 74. 4. 29
7. 준공도면 : 별첨안준도면 (별첨)

○ 서울특별시공고제 8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 및 지정취소공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 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3조 및 가. 지정 업체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와 지정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4. 30
 서울특별시장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4수출액(달러)	비고
422	삼협악기공업사	김종운	성동구중무동 170-19	전반악기(피아노)	95,130	
437	해태염직공업사	박형재	성동구성수 2가 315-68	염색가공	180,000	
1005	유경산업사	유성우	도봉구미아동 164-5	나이론사우수사(염사)	87,000	
634	삼일제작소	홍기춘	서대문구상암동 235-1	편의용차	120,300	
635	극동공업산업사	신진호	서대문구유산동 65-18	목각공예	41,989	
902	동양식품상사	정영삼	영등포구신대방동 344-54	과일해태(신로봉)	187,500	
1109	광성기계공업(주)	황의성	관악구노량진동 151-14	공작기계체제	330,000	

나. 지정취소 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취소사유	비고
415	성립섬유(주)	김관섭	성동구하왕십리 2동 107-4	세라	수출실적부족	
422	신안염직(주)	이경환	성동구도선동 332	해태염색	.	
437	연한염직(주)	전중현	성동구성수 1가 189	포리에치발제물	.	
454	금강산업사	이재진	성동구성수 2가 341-1	해타	.	
483	일화제약(주)	김원필	성동구송정동 43-16	인삼차	.	
538	유상화학(주)	정관식	성북구하월곡동 90-293	합성수지계	매년수출액 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 87 호

서울특별시립동대문부녀
- 부지관 공인계각 공고

서울특별시 조례 제 837 호 (1974.
4.15) 로 기관명칭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립부녀부지관
장의 직인을 개각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
고한다.

1974.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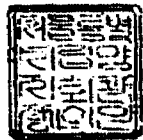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장

- 1. 개각한인사용일자: 1974.5.2
- 2. 직인의 인형

경신직인



폐기직인



경신계인



폐기계인



차 례	처 리 요 령	참조법규
제 3 조 (거주용사용제한)	<p>4. 시내입야(보안림포함)는 녹지국장</p> <p>5. 시의입야에 대하여는 시장이 위촉한 관리인</p> <p>6. 잡종재산의 보호, 현황유지는 관할 동장</p> <p>7. 제 2 호의 구, 동재산 관리에 관하여는 주관국장인 내무국장이 감독한다.</p> <p>8. 제 3 호의 재산관리에 관하여는 주관국장이 감독한다.</p> <p>9. 전③항에 의한 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재산처분시는 물론 여하한 경우라도 일체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p> <p>②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전항의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다.</p> <p>③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건의 표시 2. 분입, 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 직, 성명 3. 분입시키고자 하는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p>①시유전물은 관사와 속사물 제외하고는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다만, 관리 및 단속에 필요한 감수인을 두는 경우 제 122 조 우와 거주용으로 임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제무회계규칙

차 례	적 리 요 령	참조법규
제 4 조 (재 산 파 악)	<p>②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직업 (직명), 성명, 연령 및 이력 3. 감수인을 두어야 할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p>③ 관사들 수사 또는 경비수사로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 징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약서 (별지 제 1 호서식) <p>관리자는 재산의 취득, 변경, 매각, 이동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참조 재무국장)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취득: 매입, 양수, 기부채납, 교환, 건물외 신축, 증축 2. 변 경: 지적분할, 지번, 지적변경 3. 매 각: 매도, 양여, 교환, 건물폐실 4. 이 동: 대부, 사용허가, 관리위임 	재무회계 규칙 제 118 조 의 2
제 5 조 (재 산 대 장 의 정 비)	<p>① 사유재산의 총괄자 및 관리자는 다음 재산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이를 보존·정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대장: 재산총괄대장 (제 2 호서식) 행정 재산대장 (제 3 호서식) (공용, 공공용, 기업용 재산대장) 보통재산대장 (제 2 호서식) (보존재산, 잠중재산대장) 	재무회계 규칙 제 138 조

차 례	제 령 요 영	참조법규
<p>제 6 조 (소속및용도 변경)</p>	<p>2. 보조대장 : 매각예정대장 (제 4 호서식) 재산인수대장 (제 5 호서식) 차수계산대장 (제 12 호서식) 기부채납대장 (제 6 호서식) 시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 7 호서식) 매 각 대 장 (제 8 호서식) 배도중시발급대장 (제 9 호서식)</p> <p>① 총괄자는 관리자로부터 전조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의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시, 매각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배도중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p> <p>② 시유재산의 소유 또는 용도변경 및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또는 사유 3. 관계도면 4.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서류 <p>③ 전항에의거 양용, 공방장 재산의 용도가 변경될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광주: 제무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표시 2. 양용결정서 	<p>제무회계 국 회 제 124 조</p>

항 목	처 리 요 령	참조법규
제 7 조 (제 해보고)	3. 권리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 4.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서류 5. 도면 (지적도 및 청사진) ① 권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적청 이 시장 (참조: 재무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권리자의 조치 및 처리와경 5. 손해부분을 표시한 도면	재무회계규 칙 제 125 조
제 8 조 (기 부채납)	① 시유재산으로 기부 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청, 소의 장은 주관국장 경유 시유재산심의회 규정 제 2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를 거쳐 다음 사항을 갖춘 기부원과 사업계획서를 첨부 시장 (참조: 재무국장) 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기부자의 주소, 성명 2. 기부목적 3. 기부조건 4. 재산의 표시 5. 가액 (추정금액) ② 전항의 경우 시유재산심의회에서 사전 검토를 받 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 부 원 2. 사업계획서 3. 기부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 또는 가옥	재무회계규 칙 제 126 조 의 2

차 례	처 리 요 영	참조법규
<p>제 9 조 (무상사용기간산정 및 사용허가)</p>	<p>및 토지대장 등본</p> <p>①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확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서 또는 증여증서 (법원의 경우 이사의 결의서) 2. 재산의 권리증서 (등기부등본) 3. 도 면 4. 인감증명 5. 사업계획서 (무상사용기간 산정을 요할 때) <p>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무상사용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p> <p>③ 전항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이 한다.</p> $\text{국공유지가액} \times \text{임대요율} = \text{년간임대료}$ $\text{기부채납지상물가액} + \text{년간임대료} = \text{무상사용년한}$ <p>④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은 시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주관국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허가 또는 권리를 하여야 한다.</p> <p>등기관계 권리확보 또한 같다.</p>	<p>시무회계규칙 제 126 조</p>
<p>제 10 조 (제상위특별경락요환)</p>	<p>① 국, 시, 과 및 청, 소의 장이 시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조치를 하고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아 다음사항을 갖춘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참조: 제우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기재사항가. 물건의 표시. 	<p>시무회계규칙 제 128 조</p>

차 례	처 리 유 형	참조법규
	<p>나. 매수목적 다. 매수예상가격 라. 매도인의 주소, 성명</p> <p>2. 구 비 서 류 가. 신 청 서 나. 매매승락서 다. 방침결정사본 라. 지적도 또는 설계도 마. 기타 필요한 서류</p> <p>②관리자는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기타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참조: 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신청서 기재사항 가. 물건의 표시 나. 목적 및 사유 다. 변경내용</p> <p>2. 구 비 서 류 가. 신 청 서 나. 도면(지적도 및 설계도) 다.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라. 준공검사 필증 마. 기타 필요한 사항</p> <p>③관리자가 시유재산과 타재산과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참조: 재무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재무회계규 칙제129조</p>

차 례	처 리 요 령	참조법규
<p>제 11 조 (동기수속)</p>	<p>1. 신청서 기재사항 가. 교환쌍방의 물건의 표시 나. 교환쌍방의 물건의 가격 (차액이 있을 때에는 차액처리방법) 다. 교환쌍방의 주소, 성명 라. 교환목적 및 사유</p> <p>2. 구 비 서 류 가. 신 청 서 나. 교환쌍방물건이 표시된 도면 및 설계도 다. 교환승락서 라. 기타 필요한 사항</p> <p>④ 재산의 관할은 차액이 1/4이 초과한 경우에는 교환할 수 없고, 차액은 재산이동시 납부하여야 한다.</p> <p>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가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등기수속을 총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표시 2. 취득관계서류 (매매계약서, 양여증서, 교환계약서) 3. 재산의 권리증 (등기부등본) 4. 전소유자의 인감증명 5. 관제도면 6. 등기위임장 및 매도증서 7. 기타 필요한 서류 	<p>제 127 조</p>

차	비	참고법규
제 12 조 (채산증·감통지및현재액보고)	<p>① 관리자의 정기보고</p> <p>1. 관리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익년 3.31 까지 시유재산 증·감상황보고를 별지제 14 호 서식에 의거 시장 (참조: 재무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의 수시보고</p> <p>관리자는 시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증·감이동보고서 (제 11 호서식) 에 도면을 첨부 시장 (참조: 재무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차수 (借受) 재산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차수대장 (제 12 호서식) 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이에 도면을 부착시켜 관리하여야 하며, 이 상황을 지체없이 시장 (참조: 재무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재무회계규칙 제 139 조
제 13 조 (대장정리)	<p>① 대장의 기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41 조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때, 임대 및 매각재산이 발생할 때,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p> <p>② 대장은 관리자별로 분류번호를 만들고 각 단위별로 일련번호를 부한다.</p> <p>③ 전 표</p> <p>1. 전표 (제 13 호서식) 는 대장정리사유가 발생할 요건이되는 안전을 불의코저 할 때마다 작성 첨부하고 그 안전이 결점되면 대장정리요원에게 주어 대장과 시유재산 이동정리부 및 보조부의 정리자료로 하고 부결하면 폐기한다.</p> <p>2. 전표는 모든 실제의 기본자료가 되는 동시에 이동상황일람표의 작성 근거자료가 되는 것임으로</p>	재무회계규칙 제 138 조

차 례	처 리 요 령	상 조 법 규
제 14 조 (행 정 재산의 사용허가)	<p>수분 및 보관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p> <p>3. 대장정리상황은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p> <p>① 사용허가</p> <p>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지방행정법 제 5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전차에 있어서는 지방행정법시행령 제 63 조 잡종재산 대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2.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참조: 재무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구내재산에 대한 사용료</p> <p>행정재산의 구내에서 식당, 매점 등 이와 유사한 영업을 위하여 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7 분상당액 이상을 년간 사용료로 한다.</p>	<p>지방행정법시행령 제 63 조</p>
제 15 조 (잡 종 재산의 대부)	<p>① 대 부</p> <p>잡종재산의 대부는 지방행정법시행령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하되 다음에 의한다.</p> <p>1. 신규대부</p> <p>시유재산의 가치손실과 특정인의 권리부여를 방지하며 재산관리의 공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다.</p> <p>가.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나. 도시계획저축 기타 사유로 인하여 매각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2. 계속대부</p>	<p>지방행정법시행령 제 63 조 재무회계규칙 제 125 조</p>

차 례	처 리 요 영	참조법규
	<p>가. 이미 대부분한 재산으로서 신량한 보호관리를 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대부분할 수 있다.</p> <p>나. 소정된 기간내에 대부분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p> <p>다만, 재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대부분적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 대부분방법</p> <p>· 잠종재산의 대부분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분할 수 있다.</p> <p>③ 수의계약의 요건</p> <p>1. 유상대부</p> <p>가. 공법인, 공직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다만, 연고자가 있는 재산은 연고자의 동의물 얻어야 한다.</p> <p>나.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을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그 연고자에게 대부분할 수 있다.</p> <p>1) 건물 또는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건물이 있는 부지로서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100평이내에 한한다.</p> <p>2)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p> <p>3) 공유재산의 지분</p> <p>4) 채해부구 기타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p> <p>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p>	<p>지방행정 법시행령 제 63 조</p>

차 례	처 리 요 영	참조법규
	<p>다만, 불량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구내의 사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1개월로 할 수 있다.</p> <p>2.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p> <p>⑦ 임대료산정 및 요율</p> <p>임대료를 산정코자 할 때에는 사유재산심의위원회장(참조: 관제과장)에 의뢰하면 재무회계규칙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요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식가의 년5푼, 기타 물건에 대하여는 그 식가의 년6푼으로 한다.</p> <p>1. 신규 대부할 때의 평가는 감정기관(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사유재산심의회에서 사정한다. 다만, 구내채산을 사용 허가할 경우의 평가는 전년도 재산평가액을 참작하여 감정기관의 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p> <p>2. 대부요율은 다음에 의한다.</p> <p>가. 관청 상호간 또는 공공단체에 사유재산의 유사사용을 승인할 경우의 임대료는 재산평가액의 6푼상당액 이상을 연간 임대료로 한다.</p> <p>나. 농경지에 대한 임대료</p> <p>농경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료는 그 토질로부터 생산되는 경작물의 토지대장 등급에 의한 기준수확량에서 공과금을 공제한 잔방에 그 년도의 농산물 정부매입가격을 승하여 산출한 액의 2할에 상당하는 액을 임대료로 한다.</p>	<p>지방재정법시행령 제66조</p>

차 례	처 리 요 영	참조법규
	<p>이 경우에는 기준수확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인근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건부대임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하기수확량에 대하여 6월말, 추기수확량에 대하여 10월말현재의 물가에 의하여 산출한다.</p> <p>다. 기타 재산의 임대료</p> <p>건 각호에 기재된 이외의 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그 재산평가액의 1할에 상당하는 액 이상을 년간 임대료로 한다.</p> <p>라. 건물임대료의 산출기준</p> <p>1) 건물전체를 사용할 때에는 건물평가액과 대지평가액을 합산한 액</p> <p>2) 2층이상의 건물을 각층별로 사용할 때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의 대지평가액을 합산한 액</p> <p>1층은 대지평가액의 1/2 이상</p> <p>2층은 대지평가액의 1/3 이상</p> <p>3층은 대지평가액의 1/4 이상</p> <p>4층은 대지평가액의 1/5 이상</p> <p>지하실은 2층에 준하여 산출한다.</p> <p>㉑ 임대료 납기</p> <p>1. 사유재산의 임대료는 년 또는 월별로 정가액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년, 수월분을 선납시킬 수 있다.</p>	<p>제부회계 규 칙 제 136조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 65조</p>

차 례	처 리 요 령	참조법규
	<p>⑩ 임대계약 체결통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 각호의 절차가 끝나면 임대료(사용료)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통지에 의하여 임대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 16 호서식에 의한 임대계약서를 작성 교부한다. <p>⑪ 손해금의 추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유재산물 당시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 체결에 앞서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 수익한 기간중 일은 이득이나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징수한다. 2. 임대료에 상당한 손해금은 경작의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시가와 년 5분의상, 경작이외의 물건에 있어서는 그 시가의 년 6분의상의 물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예외조치 다음 사항은 손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지방청에 의한 난민정착지 나. 평당 단가 2만원 미만으로 100평미만의 재산 다. 기타 재산중 시가 특별한 사유로 손해금을 면제키로 방침결정된 재산 	<p>지방재정 법 제 57 조 의 5</p>

차 례	차 리 요 령	참조법규
제16조(제 산화적결정 및 유효기 간)	<p>① 대부계약의 해제와 취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부재산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공공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될때 (소실보상장구) 2. 대부를 받은자가 그 재산의 보존관리를 태만 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을때 (취소) 3. 임대료를 채납하였을때 (취소) 4. 대부에 있어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때 (취소) 5. 기타 계약조항에 위반된때 (취소) <p>② 시설의 배수 및 제남임대로 징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기간만료전에 국 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 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재산에 시설이 있는 것으로 배수할 필요가 있는것은 배수하여야 한다. 2. 임대료채납액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 에 의하여 제남처분한다. 	지방세징 입 제 57조 2
	<p>① 가 격 결 정</p> <p>시유재산상 위득·처분·대부·교환 및 기부 제 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 또는 기타 감정 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가진 기관의 감정가격을 참작하여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그 가격 을 결정한다.</p>	

차 례	처 리 요 령	참조법규
<p>제17조(장종 재산의 매 각)</p>	<p>② 유효 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항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가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2. 6개월이 경과하면 제사정하고 3.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한다. 4. 다만 계속하여 대부하는 재산과 철거된 정착지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p>① 매각유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종채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에 앞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매각을 책정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재사용할 가치의 여부 나. 관계법규에 저촉여부 다. 기타 필요한 사항 <p>② 매 각 방 법</p> <p>매각하기로 책정된 재산은 일반공매재산과 수의 계약재산으로 구분하여 매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 반 공 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고자가 없는 재산 나. 상반된 이해관계인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의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재산 다. 연고자가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은 재산 라. 대부계약 또는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된 재산 마. 기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p>지방재정 법시행령 제 67 조</p>

차 례	처 리 요 영	참조법규
	<p>인정한 재산</p> <p>2. 수 의 배 자</p> <p>가.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p> <p>나. 대부계약자가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제 1 회 공매입찰일 이전에 재산가치의 5 분에 상당한 공매수수료를 납부하고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p> <p>다. 일반공매에서 2 회이상 유찰된 재산</p> <p>라. 점유재산중 동장이 발급하는 점유확인서본 첨부하여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각액 앞서 점유기간에 상당한 손해금을 소급하여 징수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3. 매수요구와 매각금액</p> <p>가. 매수요구자에 대하여는 매수요구서를 발송한다.</p> <p>나. 매수요구서는 필지제 21 호서식에 의하고 그 발부는 직권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수령인을 받게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p> <p>다. 임대계약자가 매수요구서를 받기전에 그 재산에 대한 매물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매수요구서와 순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한후, 매수요구서식에 의한 매물공지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매수요구서의 방법에 의한다.</p> <p>라. 무상대부한 재산을 그 대부받은 공공단체에 매수요구하거나 매물권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전 각항에 준한다.</p>	<p>지방세징 입시행방 제 67 조</p>

주 제	의 의 요 점	참 조 조 문
	<p>4. 계약금의 결제방법과 납부방식 및 기간</p> <p>가. 계약금의 결제방법</p> <p>계약금의 가액결정 절차는 차부의정규의 제 134 조에 따른다.</p> <p>나. 납 부 방 식</p> <p>계약금의 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연부로 분납하게 할 수 있다.</p> <p>다. 일시를 정산의 납부기간</p> <p>계약금의 일시에 납부하면 3할 공제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대금을 납부치 못할 때에는 3할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원가 납부하여야 하며 1년경과시는 해당되지할 수 있다.</p> <p>라. 연부제산의 납부기간</p> <p>계약금을 연부로 분납할 경우에는 계약서 보증금 1할과 계약금의 2할이상을 제 1회 분입금으로 하고 잔액은 4년내에 연 2할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할의 분입금은 계약보증금을 증당한 차액으로 한다.</p> <p>마. 위 각항중 과금연체가 있을 때에는 연 2할의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p>	<p>지방자치법 제 69 조</p>

차 례	처 리 요 영	참조법
	<p>바. 매매계약의 체결방법</p> <p>매각대금을 조정결의하여 납부서를 발급하여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였을 후 수납부에 등재하고 납부필 통지서를 첨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서식 제 17 호)</p> <p>사. 매수자의 명의변경</p> <p>장종재산물 매수한자가 다음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서식제 18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지적 미확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불가능할 때 3) 년부로 계약한 재산중 그 대금을 완납하기전에 매수인이 당해 소재지로부터 이전한 때, 또는 등지상 시설물이 소유권 이전된 때 <p>아. 매각재산 사용승인</p> <p>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재산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년부로 계약한 자가 그 대금잔납 이전에 등지상에 시설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p>다만, 제납시는 제외한다.</p>	

차 례	처 리 요 명	참조법규
부 칙	<p>2)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부득이 대금을 완납하고 도 사권행사를 할 수 없을 때</p> <p>자. 매매계약의 취소와 해제</p> <p>1) 매각에 있어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취소)</p> <p>2) 매수자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 제출하였거나 부정할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등기말소청구의 소송제기)</p> <p>3) 매각대금을 체납하였을 때 (체납처분과 병행할 수 있음)</p> <p>4) 기타 계약위반</p> <p>차. 증 감명 조정</p> <p>1) 재산매각후 소유권 이전시 증감명이 있을 때는 매매계약서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시가의 재산가격결정은 소유권 이전시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에 의하여 조정한다.</p> <p>2) 과세기준가격이 정하여있지 않을 때에는 인근 재산의 기준가격에 비준하여 결정한다.</p> <p>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사 명

◎ 1974. 4. 21

충 구 지방행정
지사보시보
지방행정지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충구 근무를 명함.

순천지방행정
지사보시보
지방행정지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포목시립소근무를 명함.

사 실 과 지방행정
지사보시보
지방행정지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시립과근무를 명함.

◎ 1974. 4. 24

삼 북 구 지방행정
주사보
이우탁
= 을지인삼 74 중양동계단파전

(74.4.24-7.25) 근무를 명함.

마 포 구 지방행정
(신동구외합동)주사보
시우석
신동구합근무를 명함.

충 구 지방행정
(마포구외합동)주사보
문영환
마포구합근무를 명함.

일 동 구 지방행정
주사보
김관수
일동구합근무를 명함.

양 동 구 지방행정
주사보
신복희
양동구보산소근무를 명함.

◎ 1974. 4. 25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지방철도원시보에 임함.

8등급(1호봉)을 급함.

지하철본부근무를 명함.

지방철도원시보에 임함.

8등급(1호봉)을 급함.

지하철본부근무를 명함.

지방철도원시보에 임함.

8등급(1호봉)을 급함.

지하철본부근무를 명함.

지방철도원시보에 임함.

장정길

김택수

전석호

정영권

하관용

5 동갑 (1호봉) 을 급함.

지하철 본부근무를 명함.

남정대

지방철도원시보에 임함.

6 동갑 (1호봉) 을 급함.

지하철 본부근무를 명함.

공 원 과 지방농림
기 사 보

주한식

74.4.1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10 자 파면처분문 (발령

제 25 호) 동일자도 변경 감

봉 3 월에 처함.

임동출장소근무를 명함.

도 시 계 회 과 지 방 행 정 사

이종욱

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보

삼상인

행정주사보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영동포구근무를 명함.

◎ 1974. 4. 26

용 산 구 지 방 행 정 보

김고영

시설관리과근무를 명함.

중 르 구 지 방 행 정 안봉현

시설관리과근무를 명함.

한 강 전 설 지 방 행 정 신영우

사 업 소 주 방 사

지하철 본부과전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 방 행 정 이걸호

주 사 보

◎ 1974. 4. 29

서 대 문 구 지 방 행 정 신경심

주 사 보

한강전설사업소근무를 명함.

용 산 구 지 방 행 정 박민재

주 도 사 업 소 서 기 보

한강전설사업소근무를 명함.

예 당 관 실 지 방 행 정 김동찬

부 직 윤 명함.

동부병원근무를 명함.

운수 1 과 장 서 기 관 박순철

내무국인사과장에 보함.

인사과장 서 기 관 연기호

판광운수국운수 1 과장에 보함.

한 강 전 설 지 방 보 특 정 원 영

사 업 소 기 장 을 보함.

한강전설사업소장을 보함.

1 호봉을 급함.

지방시설부기감에 임함.

◎ 1974. 5. 1

박순희

<p>지방농림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근무를 명함.</p>	<p>김주영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중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임진경 지방철도원시보에 임함. 8등급(1호봉)을 급함. 지하철본부근무를 명함.</p>	<p>이옥순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중부병원근무를 명함.</p>
<p>백순식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근무를 명함.</p>	<p>변용우 지방외무기정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경신병원장직무대리를 명함.</p>
<p>유계숙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병원근무를 명함.</p>	<p>이광욱 어린이대공원 지방농림사 관리사무소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 기술담당관직무대리를 명함.</p>
<p>김영숙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남부병원근무를 명함.</p>	<p>안희재 영등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손영희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근무를 명함.</p>	<p>김구석 성북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p>

용산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유정수	영등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진영일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토목 기사보	박영수	개량1과 지방토목사	조정구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토목 기사보	박종석	동대문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한성우
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조정용	서대문구 지방토목 기사보	이용분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윤효창	도시가스 지방토목 사업소 기사보	이원환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박재갑	서대문구 지방토목 기사보	정성국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신정목	서부건설사업소 지방토목 기사보	김선중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장봉혁	개량2과(양서 지방토목 출장소와전중) 기사보	양계유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파견근무를	해제함.
성북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김학진	성북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장기순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이춘원	건설부기강도 로건설사무소	김태준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입을
도시가스 지방토목 사업소 기사보	이무웅	명함.	
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사에	입함.
성북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강태울	6호봉을	급함.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경북안동지방법원 법정사무원	공무원	연 구	연 정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건축기과차보에 입함.
지방토목기사에 입함.			1호봉을 급함.
7호봉을 급함.			조경과 조경 2계장에 포함.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 부 구 지방건축사 김 창 배
건설부건설 공무원교육원 토목기사	조 영 환		성동구건축과장직무대리를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입을 명함.			관 악 구 지방건축사 장 기 찬
지방토목기사에 입함.			서외문구 건축과장이 포함.
5호봉을 급함.			종 로 구 지방건축사 한 진 태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 건축과장직무대리를 명함.
도봉구수도사업소 철소신설관리 담당	지방서기관 이 승 권		영등출장소 지방건축사 김 현 국
도봉구수도사업소장에 포함.			종로구 건축과장직무대리를 명함.
관악구수도사업소 철소신설관리 담당	지방행정사 우 현 이 승 송		용 산 구 지방건축사 최 규 황
관악구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천호출장소 건축과장직무대리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교육원교수부	지방서기관 김 영 근		사 대 문 구 지방건축사 신 현 갑
공무원교육원 과학과장에 포함.			영등출장소 건축과장직무대리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교육원교수부	지방서기관 서 승 태		성 동 구 지방건축사 이 중 환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건축과장직무대리를 명함.
부지국 공원과장 겸직을 명함.			마 포 구 지방건축사 이 천 준
			은평출장소 건축과장직무대리를 명함.
			진 추 과 지방건축사 노 태 식
			상봉구 건축과장직무대리를 명함.
			조 경 과 지방건축사 노 원 석
			진원구 영신과 근무를 명함.

<p>은행출장소 지방포클 (전일파출) 기 관 유 락 준</p> <p>은행출장소 포클파출에 포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김 해 경</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중부병원 근무를 명함.</p>	<p>이 수 자</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권 옥 래</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권 정 숙</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최 선 영</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김 영 애</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송 리 라</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하 행 순</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박 란 숙</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유 기 만</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호 정 욱</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서 정 란</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김정옥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경 배 수</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김영희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송 기 순</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김영숙 1호봉을 급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p>	<p>임 영 순</p>
<p>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김영숙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박 옥 주</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김영숙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강 성 경</p>
<p>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박종희 1호봉을 급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농지국 농림계정 농원 과장</p>	
<p>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농지국 농지과장에 보함.</p>	
<p>시 울 특 별 시 장</p>		